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참고인명단(2명)

성명	직업	요구위원	출석일	관련부서	비고
윤등룡	DR엔터테인먼트 대표	박찬원	2021.11.29.(월)	문화관광과	(요구번호 96번 관련) 평창한류사관학교 설립 업무협약과 관련 사업전반
전순표	수동마을영농조합 법인 대표		2021.12.2.(목)	유통산업과	(요구번호 255번 관련) 계촌1리 수동마을 현황 전반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4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참고인”이란 대상사무에 대한 책임은 없더라도 의회에서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의견진술의 청취가 필요할 경우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이해관계인

나. 목격자

다. 전문가, 기술·자격·경험 등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필요한 사람